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김용연 의원

나. 의안번호: 제2094호

다. 발의일자: 2020. 12. 23.

라. 회부일자: 2021. 1. 21.

2. 제 안 사 유

○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 관리인의 지정,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나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3 신설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석면안전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,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○ 「석면안전관리법」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(이하 '감리인')의 지정, 등록, 등록의 결격사유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30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규정하고 있고, 감리인의 평가를 제30조의5에, 감리인의 등록 취소를 제30조의6에, 청문에 관한 사항을 제41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0조부터 제30조의6까지와 제41조의 내용 중 감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음.

다만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것으로, 이는 조례를 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[1].

1)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P. 9